

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재외국민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 입학원서는 인터넷 접수하며, 별도의 모집요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hak.pknu.ac.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전형, 수험번호 및 모집단위명을 기재하여 전산 출력한 『제출서류 표지』를 우송할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서류 제출기한 내 부경대학교에 도착(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 유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서는 지원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입학원서 접수 안내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유의사항	1
2. 입학원서 접수	2
3.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2
4. 입학원서 전형료	3
5. 서류제출 유의사항	3
6. 기타 유의사항	4

I. 전형 일정 5

I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6

Ⅲ. 전형 안내

1. 지원 자격	7
2.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안내사항	7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10
4. 제출 서류	11
5. 선발 방법	13

IV. 면접고사 14

V.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14
2. 합격자 등록(등록확인에치금 납부)	15
3. 잔여등록금 납부	15
4.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에치금 환불	15

【별지 제1호 서식】 부경대학교 입학원서 16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종합기록표) 17

【별지 제3호 서식】 보호자 외국 근무기간 기재(종합기록표) 18

【별지 제4호 서식】 제3국 수학사유서 19/

입학원서 접수 안내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다만, 산업·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형을 의미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 지원횟수는 입학원서 접수 시간 순서로 6회까지만 인정하며, 6회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 ※ 지원횟수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하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다. 이중등록 금지사항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2개 이상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모든 대학의 합격을 무효로 함
-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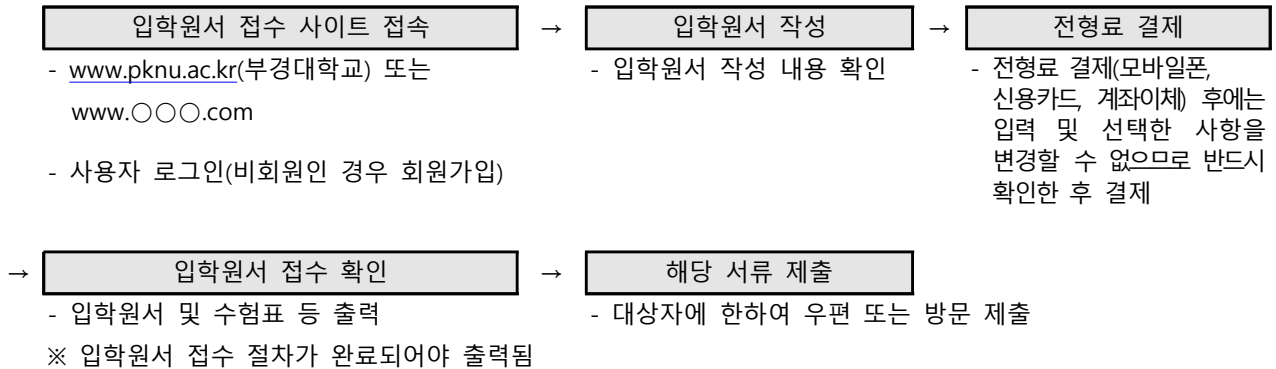
-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입학원서 접수

가.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나. 접수 기간: 20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다. 접수 절차: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적용한 원서접수 진행



3.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접수는 전자결제(전형료 납부)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됨
- 접수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사진크기: 3.5cm×4.5cm(300KB이하), 파일형태: JPG>
※ 사진은 우리 대학 입학 후 학생증 발급 시 활용됨
- 입학원서 접수 후 반드시 입학원서 접수 여부를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 또는 본인이 지원한 입학원서 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www.○○○.com)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임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지정된 기일[2020. 7. 28.(화) 18:00]까지 제출서류를 부경대학교로 등기우편(서류 제출 마감일 소인 유효) 및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부경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다만, 지원자격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력조회 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는 반드시 서류 제출기한 내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4. 입학원서 전형료

전형	전형료		계
	1단계	2단계	
재외국민전형	25,000원	20,000원	45,000원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수수료는 부경대학교에서 부담함

【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내 】

- 반환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반환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료
- 방법: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입금 및 학교 직접 방문(다만, 학교 직접 방문 반환 신청은 2020. 12. 18.까지)
- ※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예정

5.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발송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원본제시를 요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동봉하고, 원본을 회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부경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입학원서 접수 후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형 또는 모집단위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음)
- 입학원서 접수 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hak.pknu.ac.kr>)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 부경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전자우편,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고교명, 졸업(예정)연도), 환불계좌번호, <별지 서식 제1호 ~ 제4호>에 관한 사항
-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및 통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6. 기타 유의사항

-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가능)을 항상 소지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hak.pknu.ac.kr>)에 등록하여야 함
- 고사장소 안내, 합격자 발표는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함
- 면접고사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고사 장소에 입장하지 않은 수험생은 결시로 불합격 처리함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 서류의 위·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
 -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I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 인터넷 접수 (www.pknu.ac.kr 또는 www.ooo.com)
서류 제출	2020. 7. 20.(월) ~ 7. 28.(화) (매일 09:00 ~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및 보호자 외국 근무기간 기재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 8. 21.(금) 17:00(예정)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면접고사	2020. 8. 27.(목) 13:00	• 대상: 1단계 전형 합격자(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20. 9. 8.(화) 17:00 (예정)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합격통지서 교부	2020. 9. 8.(화) 합격자 발표 이후 ~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0. 12. 28.(월) ~ 12. 30.(수) 16:00까지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 지정 기한 내 등록확인예치금 미납부시 합격을 취소함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09:00 2021. 1. 4.(월) 09:00 2021. 1. 4(월) 21:00 까지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추가합격자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0. 12. 31.(목) 16:00 까지 2021. 1. 4.(월) 16:00 까지 2021. 1. 5.(화) 16:00 까지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 지정 기한 내 등록확인예치금 미납부시 합격을 취소함
잔여등록금 납부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까지	• 지정 기한 내 잔여등록금 미납부시 합격을 취소함

[서류제출처]

- [우편제출]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입학관리과
- [방문제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A21) 1층 입학상담센터
- ※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글로벌 자율 전공학부	인문·사회계	글로벌자율전공학부	1	공과 대학	자연계	시스템경영공학부	1		
	자연계	글로벌자율전공학부	0			신소재시스템공학과	1		
	소계		1			IT융합응용공학과	2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1			안전공학과	1		
		영어영문학부	2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1		
		일어일문학부	1			의공학과	1		
		사학과	1			인쇄정보공학과	2		
		경제학부	2			재료공학과	1		
		법학과	2			전기공학과	1		
		행정학과	2			전자공학과	2		
		국제지역학부	1			정보통신공학과	1		
		중국학과	1			제어계측공학과	1		
		신문방송학과	1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0		
		정치외교학과	1			컴퓨터공학과	1		
		유아교육과	0			토목공학과	1		
		예·체능계	시각디자인학과			0	화학공학과	1	
			공업디자인학과			0	소계	28	
	패션디자인학과		0						
	소계		15						
	자연 과학 대학	자연계	응용수학과		1	수산 과학 대학	자연계	식품공학과	1
			통계학과		0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1
			물리학과		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
화학학과			1		인문·사회계		해양수산경영학과	1	
미생물학과			1		자연계		수해양산업교육과	0	
예·체능계		해양스포츠학과	0				자원생물학과	1	
자연계		간호학과	0				식품영양학과	1	
소계			3				생물공학과	1	
경영 대학	인문·사회계	경영학부	2				수산생명의학과	1	
		국제통상학부	2	소계	8				
	소계		4						
공과 대학	자연계	건축공학과	1	환경· 해양 대학	자연계		환경공학과	1	
		건축학과(5년)	1				해양공학과	1	
		고분자공학과	1				해양학과	1	
		공업화학학과	1			지구환경과학과	1		
		금속공학과	1			환경대기과학과	1		
		기계공학과	2			에너지자원공학과	0		
		기계설계공학과	0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1		
		기계시스템공학과	1			생태공학과	0		
		냉동공조공학과	1			소계	6		
		소방공학과	1			합계	65		

- ※ 1.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별도 선발인원 제한이 없으며, 본교에서 정한 최소 학업 역량을 갖춘 자 전원 선발 가능하나, 모집인원이 0명인 모집단위는 지원할 수 없음
2.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국책사업 선정 등 대학구조 개혁으로 인한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Ⅲ

전형 안내

1. 지원 자격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교육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학력요건	비고
A	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계속 이수한 자 (3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4개 학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 ○ 부모 모두 외국 근무·거주·체류·영주기간은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함	
B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C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		
D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3년(1,095일)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E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F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G	자영업자 자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자영업을 한 자의 자녀		
H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음	
I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유학, 교육, 연수, 훈련,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서 벗어남, 다만, 공무원의 해외 고용휴직은 인정

2.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지원자는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내·외에서 이수해야 함. 다만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초·중·고 교육과정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여학연수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 고교과정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 고교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해당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발급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부모 및 학생의 출입국관련서류, 해외근무자 재직관련서류가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함
-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 허용기간에서 제외함(해당 증빙서류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지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해외근무, 거주, 실제 체류기간 기준

구분	해외체류일수 내용
학생 이수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학생은 반드시 부·모 모두와 함께 체류·거주 하여야 함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전교육과정이수자 지원자격 심사기준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본교 지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외국학교 인정기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 이데올로기 등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유아원, 유치원,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형식

- 보호자의 근무형식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로 한정함

- 상사직원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한 직원에 한하며, 파견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의 동반 및 체류기간만 적용

○ **보호자 근무·거주·체류기간 인정 기준**

- 지원자의 지원자격 인정 기간인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근무·거주·체류한 경우에 한해 근무 및 거주 기간으로 인정(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하며,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산정
- 근무·거주·체류기간은 해당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근무기간: 증명서 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에 기재된 최초 입국일 등으로 거주사실 확인
-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영주기간: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인정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 거주(체류)기간, 재학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 단계	총점	반영 비율
1단계	-	지원 자격 서류 심사
2단계	200점	면접고사 성적 200점

-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거주·체류기간을 산정함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제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번호	구분	영주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유치과·과학·교수원	현직인근무자	자영업자	전교과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비고
1	입학지원서	○	○	○	○	○	○	○	○	○	본교 양식
2	종합기록표	○	○	○	○	○	○	○	○	○	본교 양식
3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	○	○	○	○			국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4	초·중·고교 전 과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6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본인 기준)	○	○	○	○	○	○	○			
7	영주권사본	○ 부·모 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영주권 취득일 명기
8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시·군·구청 발급
9	학력인정증명서									○	교육청 발급
10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본사 원본대조필
11	해외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외국정부 발행
12	법인세납부이력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외국정부 발행 (회사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3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외국정부 발행
14	재직(경력)증명서 (외국체류 경력증명내용 기재)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	○	○				본사 발행, 국내 소재 기업체 발행의 재직(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불필요
15	신분증 사본					○			○ 학생		
16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					○					
17	여권사본(이중국적자)		△	△	△	△	△	△	△		
18	제3국 수학사유서(해당자)		△	△	△	△	△	△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재직(경력)증명서상 해외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서는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함
-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부모의 이혼(사망) 시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제출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해외 발급 서류 안내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 발급 서류 일체: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보호자 법인등록증, 보호자 사업자등록증명서, 보호자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00, 법무부 02-720-8027
- 외교부(www.0404.go.kr) 여권과 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페이지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 (2019년 5월 14일 현재 117개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8)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추가 서류 제출안내

【졸업예정자로서 재외국민전형에 합격한 자의 추가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1. 2. 24.(목)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고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제출사유: 등록자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여부 확인 용도

라. 제출방법: 부경대학교로 등기 우편(서류제출 마감일 소인 유효) 및 방문 제출

※ 제출서류는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선발 방법

- 구비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합격선 및 후보순위자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내용
1순위	면접고사 3영역 성적 우수자
2순위	면접고사 2영역 성적 우수자
3순위	면접고사 1영역 성적 우수자

-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부터 성적순에 따라 지원자 모두(불합격자 제외)를 후보순위자로 선발하여 미등록 충원을 실시함

IV

면접고사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 8. 27.(목) 13:00
- 장소: 추후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2. 대상: 1단계 합격자

3.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영역

영역구분		문항수	출제범위	평가점수	비고
I 영역	전공 적성 및 전공 이해도	1문항	전공선택동기, 전공수행능력, 학업계획 내용	40 ~ 50	
II 영역	인성 및 품성	2문항 중 택1	가치관, 자아관, 지도자적 자질, 사회성	40 ~ 50	
III 영역	문제해결 능력	2문항 중 택1	문제에 대한 이해력 및 표현력,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해결력	40 ~ 50	

- 기타 참고사항

- 문제는 계열 상관없이 A형과 B형의 2개 유형으로 출제
-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하고 평가는 답변 준비시간 10분,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로 실시
- 배점: 기본점수 50점, 최저 120점, 최고 150점
- 출제범위(과목명): 고등학교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의 전 영역

V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일시

- 1단계 합격자: 2020. 8. 21.(금) 17:00(예정)
- 합격자: 2020. 9. 8.(화) 17:00(예정)
- 추가 합격자: 전형일정표 참조

- 방법: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 합격자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부경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2. 합격자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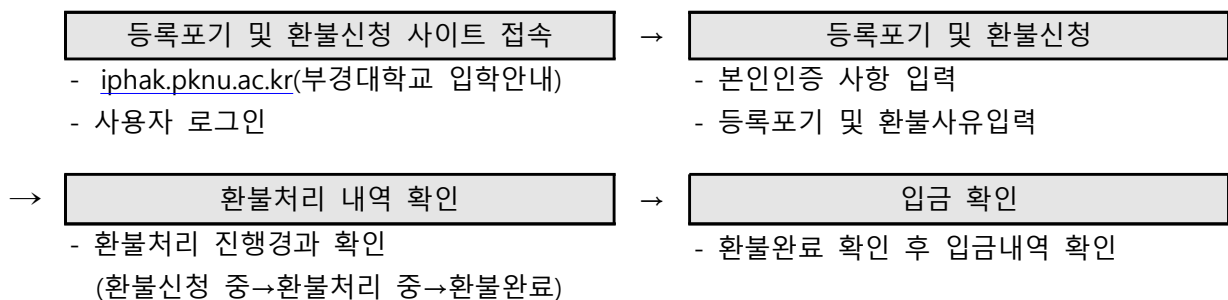
- 합격자 등록기간: 2020. 12. 28.(월) ~ 12. 30.(수) 16:00까지
-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전형일정표 참조(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일정의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방법: 현금등록(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은행)
- 고지서는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하여 해당 대학 입학이 모두 취소됨

3. 잔여등록금 납부

- 기간: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까지
- 방법: 현금등록(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은행)
- 고지서는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의 수납절차를 거쳐 본인의 등록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자로 처리됨
-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 등록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잔여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

4.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환불

- 기간: 별도 지정
-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부경대학교 입학원서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대학											모집단위								
지원자 학력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별			사진				
	주민등록 번호							-											
	출신고교																		
	고교졸업(예정) 날짜																		
지원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SAMPLE 온라인 입력																	
추가 연락처 1																			
추가 연락처 2																			
추가 연락처 3																			
환불계좌					은행명						예금주 성명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우편배달 사고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종합 기록 표

모집단위	대학		학부(학과,계열)	수험번호		성명	
지 원 자 격 구 분							
① 영주 교포 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⑥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⑦ 자영업자 자녀	⑧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⑨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학교를 모두 기재]

학교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국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 . . ~ . . .	년 개월	SAMPLE 온라인 입력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교포 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종 합 기 록 표

모집단위	대학	학부(학과,계열)	수험번호	성명	
------	----	-----------	------	----	--

☐ 보호자 외국 근무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

구분	외국 근무(체류) 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외국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간	근무(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년 개월	SAMPLE 온라인 입력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 .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제3국 수학사유서

수	험	번	호	
모	집	단	위	
성			명	
지원	자격	구분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 (학년 학기)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